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이원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
----------	----

발의연월일 : 2019. 2. 8.

발 의 자 : 이원국 · 진선미 · 박원서 ·
방민수 · 황주영 · 김남현 ·
신무연 · 서희원 · 양평호 ·
제갑섭 · 임인택 · 조동탁 ·
박희자 · 김영민 · 김연후 ·
이승일 · 한경혜 · 정미옥
의원 (18명)

1. 제안이유

강동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나. 구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상징물의 관리,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6조)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홍보과(홍보팀)와 협의

라. 입법예고(2019. 2. 9.~ 2. 13.)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휘장”이란 구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문양)을 말한다.
3. “브랜드”란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꽃 : 별표 4
5. 새 : 별표 4
6. 나무 : 별표 4
7. 글꼴 : 별표 5

제4조(구기) ① 구기는 정식기와 계양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계양할 시
「대한민국 국기법」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식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계양시 사용하고 계양기는 실외
계양시 사용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표준 편람』과 『강동구 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
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강동구 상징물을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각 호에 따라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 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하여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 시 조치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회 사 명(단체)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 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단체)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구체적으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p>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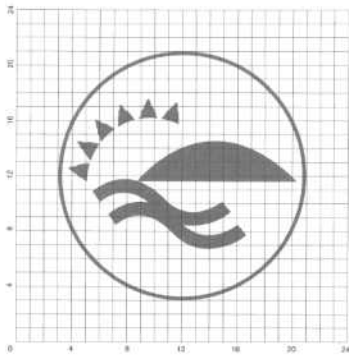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 제1호 관련)

1. 휘장

(1) 기본형



(2) 작도법(그리드)



2. 휘장의 의미

6,000여 년 전 선사시대의 움집을 형상화하여 진취적이고 생동적인 붉은색으로 **해뜨는 강동**을 이미지화 하였고,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하나로 어우러진 **맑은 강동**을 웅비하는 기상의 형태로 표현, 푸른 자연을 우리 고유의 주거형태인 초가지붕형으로 형상화하여 안온하고 전원도시적인 **푸른 강동**을 표현

3. 색상

■ RED : DIC 198 / M100 + Y100

■ BLUE : DIC 220 / C100 + M50

■ GREEN : DIC 2568 / C100 + Y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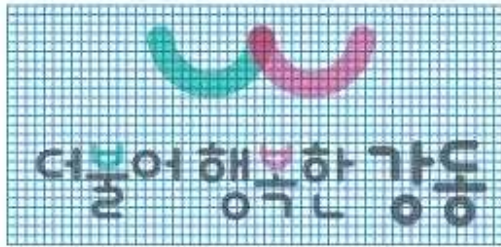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 제2호 관련)

1. 브랜드

(1) 기본형



(2) 작도법(그리드)



2. 브랜드의 의미

‘더블다’라는 단어에는 ‘함께’라는 뜻을 내포하며 ‘함께’는 ‘참여’로 이는 ‘포용과 나눔, 평등’으로 뜻이 확장됨. ‘더불어’와 ‘행복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ㅂ’에 캐릭터를 부여하여 모두 다함께 행복한 강동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표현

3. 색상

-  Green : C70 M0 Y40 KO / R46 G182 B170 #2EB6AA
-  Purple : C14 M96 Y42 K4 / R204 G26 B90 #cd1b5a
-  Pink : C0 M70 Y15 K0 / R234 G7109 B147 #eb6d94
-  Grey : C0 M0 YO K80 / R89 G87 B87 #595757

[별표 3] 상징물의 종류(제3조 제3호 관련)

1. 캐릭터

(1) 기본형



(2) 변형



2. 캐릭터의 의미

캐릭터의 이름인 강동이의 '강동'은 江東區에서 따왔으며, '이'는 사람을 칭하는 말로, '강동구민'을 상징. 강동미의 '강동'역시 江東區에서 따왔으며, '미'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한자어 '美'를 의미하여, 강동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강동구민의 아름다운 마음을 의미

[별표 4] 상징물의 종류(제3조 제4호~제6호 관련)

1. 구화 : 매화



엄동설한의 모진 추위 속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꽂한 기개로 강인한 강동구를 상징

2. 구조 : 종달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로 해 뜨는 강동의 이미지 상징

3. 구목 : 잣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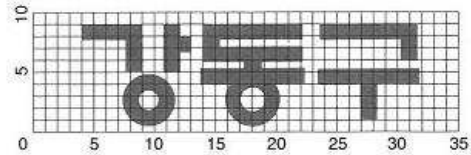
자생수목이며 늘 푸른나무로 동쪽의 경치 좋고
공기 맑으며 푸른 강동구를 상징

[별표 5] 상징물의 종류(제3조 제7호 관련)

1. 로고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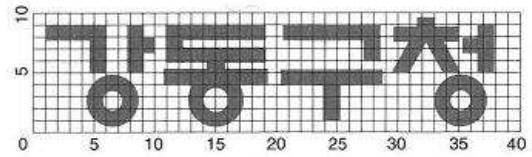
국문로고타입 (A형)

강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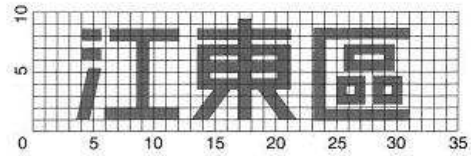
국문로고타입 (B형)

강동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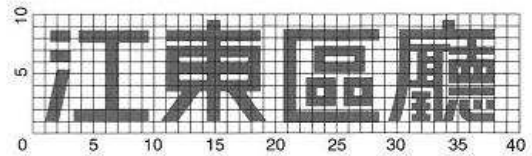
한문로고타입 (A형)

江東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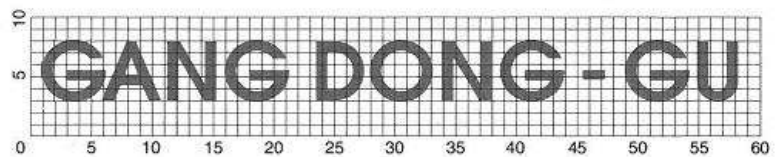
한문로고타입 (B형)

江東區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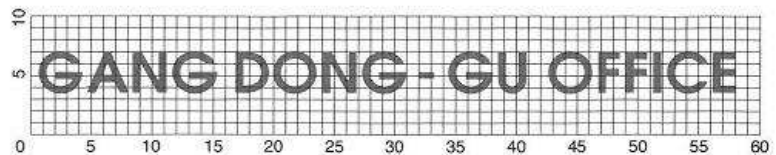
영문로고타입 (A형)

GANG DONG - GU



영문로고타입 (B형)

GANG DONG - GU OFFICE



2. 시그니처

국문좌우조합



국·영문좌우조합



한문좌우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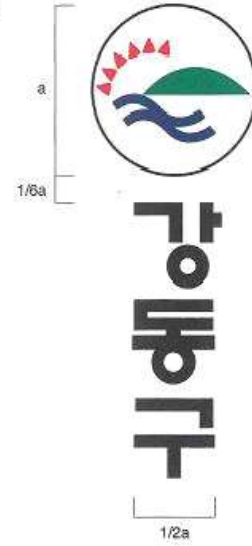
한·영문좌우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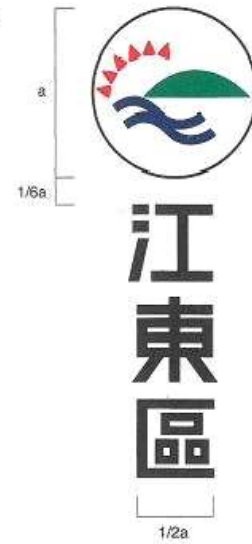
영문좌우조합



국문세로조합



한문세로조합



[별표 6] 구기(제4조 관련)

1. 정식기

- (1) 규격 : 1350mm×900mm
- (2) 재질 : 군청색 공단 또는 벨벳, 금실 자수
- (3) 색상 : 청색 바탕, 백색 휘장, 금색 테두리



2. 계양기

- (1) 규격 : 2100mm×1400mm
- (2) 재질 : 합성섬유
- (3) 색상 : 청색 바탕, 백색 휘장

